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0일,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충권의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국가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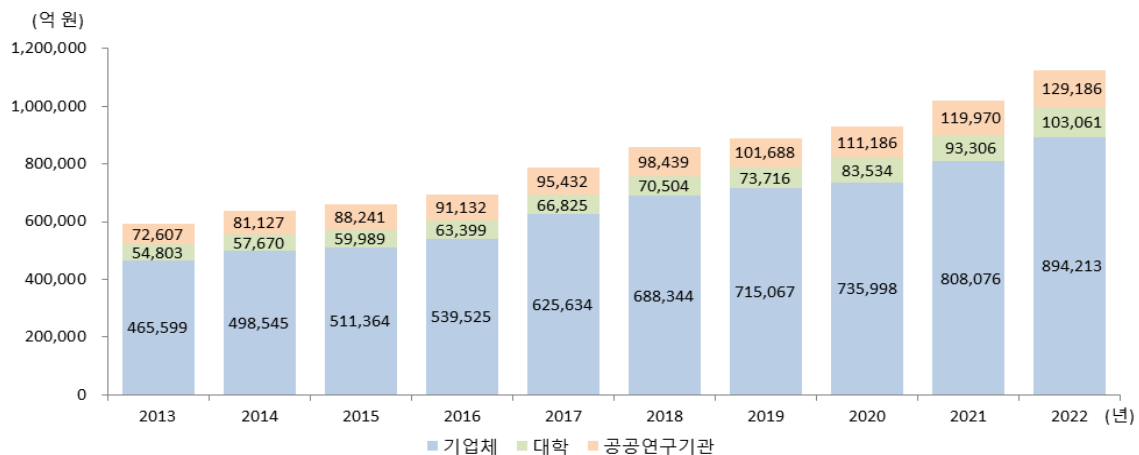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R&D의 연구개발비는 2022년 기준 89조 4,213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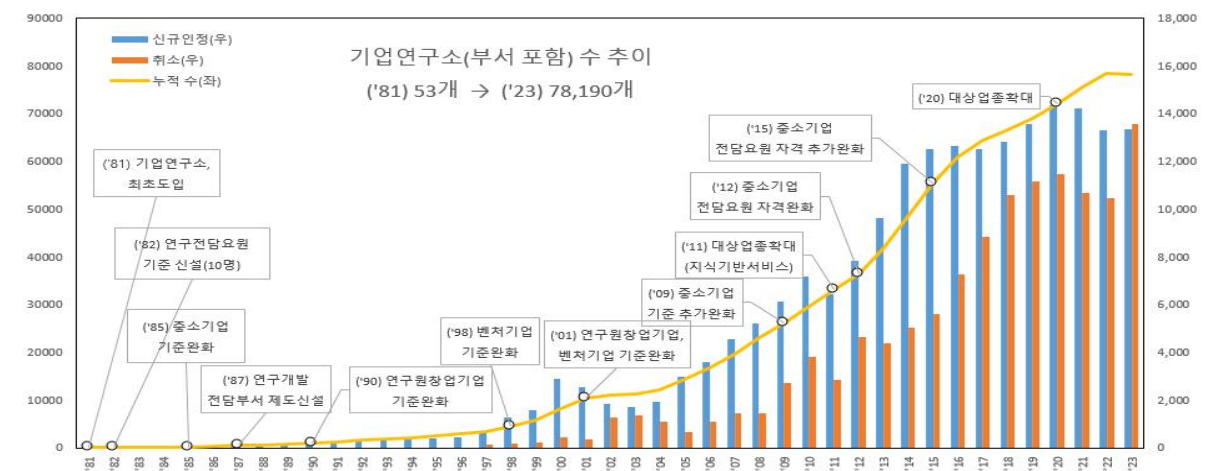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이러한 민간 R&D 성장 배경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분야에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량 제고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81.10월 46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하고 지원 수단으로서 'R&D조세지원'과 '연구요원 병역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가 도입되었음.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도입 이후 기업 R&D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건요건완화,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3년 말 기준 약 78,000개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운영 중이며, 연구원 수는 약 458,000명이 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참고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증가추이 및 제도개편 연혁).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증가추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실 운영에 관한 고발성 민원 증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브로커 활동, 준수사항 위배 적발 시 자진 취소를 통한 조세 지원 환수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간 무제한, 현장점검의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현행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는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에 비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비하므로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개별 행정부처 단위로 담당 업종별 기업 R&D 지원을 각기 추진하고 있어([참고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기업관점에서 정부지원을 전반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약 43년간 기업 R&D의 기초·기반

역할을 수행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그 소속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 의 인정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 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 금융 지원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 홍보사업 등
	제18조 유공자 포상 등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20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5장 보칙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현장조사
	제23조 감독명령 등
	제2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3.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운영,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기초연구법」(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구법」 일부개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기초연구법」의 목적¹⁾ 및 법적 체계를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제410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안건이었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²⁾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및 타 정부부처의 이견 조율을 통한 최종 수정의견과 동일하게 발의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타 제정안에 비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검토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임.

1) 「기초연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김영식의원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0420, 2023. 3.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가 동어반복적 표현 등으로 불명확하여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 등의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³⁾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자칫 제2호는 필요적 인정 취소사유의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항 신설을 통한 입법 조치 등 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시 진행하는 청문 절차에 대해 현행 「기초연구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검토보고서 p.20~p.21 참고

4) 이정문의원 발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86, 2024. 6. 7.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수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